

화장품 심사 절차에서 학술 자료의 평가 기준, 방법 및 조건 설정에 관한**보건부 공고**

불기 2568년(서기 2025년)

불기 2565년(서기 2022년) 화장품법(제2호)으로 개정된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의 제5조 첫번째 단락 및 제6조 제12의2항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2025년 3월 19일 개최된 화장품위원회 제1/2025차 회의의 권고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조 본 공고는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공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술 자료의 평가"란 종전에 화장품에 사용된 적 없는 성분, 물질, 물질의 기능 또는 기술과 관련된 학술 자료의 평가를 의미하며, 해당 문서는 전문가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3조 학술 자료 평가 신청서를 접수한 식품의약품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신청서 및 제출된 증빙 서류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한다.

(2) 학술 자료를 평가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한다. 해당 전문가는 식품의약품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심사 학술 자료 평가 전문가 명단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장품 분야 학술 자료 평가 국내외 전문가, 전문가 조직,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등록 기준, 방법 및 조건에 관한 보건부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3) 학술 자료 평가 지침에 따른 학술 자료의 심사를 위해 해당 정보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에게 송부한다. 종전에 화장품에 사용된 적 없는 성분, 물질, 물질의 기능 또는 기술이 사용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해당 정보를 송부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4) 평가 결과를 취합한다.

(5) 신청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2025년 6월 25일 공고

씀싹 텁수틴

보건부 장관